광주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2 - 862호

광주광역시 남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「광주광역시 남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 「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2. 6. .

광주광역시 남구청장

1. 자치법규명 : 광주광역시 남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

2. 개정이유

○ 아동행복과가 여성가족과에서 분과됨에 따라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아동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로 변경

3. 주요내용

○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위원회 변경

- 보육정책위원회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로 변경 (안 제20조제2항, 제21조)

4. 참고사항

가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5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께서는 2022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남구청장(참조:아동행복과장)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기한 : 2022. 7. 21.(목) 한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○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○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○ 그 밖에 참고사항 등

다. 제출할 곳

- ○ 주　　소 : 우)61687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(봉선동) 남구청 아동행복과
- ○ 전　　화 : 062)607-3545
- ○ F A X : 062)607-3595

라. 의견제출 방법

- ○ 서면, 전화, 팩스, 구 홈페이지, 직접방문 등

6. 기타사항

- ○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아동행복과(☎607-354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광주광역시 남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광주광역시 남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호 후단 중 “구청장이”를 “구청장의”로 한다.

제20조제2항 중 “보육정책위원회”를 “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”로 한다.

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보육정책위원회”를 “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운영시간) 장난감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(생 략) 2. 운영시간은 제16조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난감도서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반드시 구청장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.	제7조(운영시간) -----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----- 구청장의 ----------.
제20조(위탁계약) ① (생 략) ② 위탁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광주광역시 남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. ③·④ (생 략)	제20조(위탁계약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------. 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21조(수탁자의 선정)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. 1.·2. (생 략)	제21조(수탁자의 선정) ----------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의 -----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